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가공전선로 지중이설사업 지원 근거 마련 및 정비의무 명시>

▣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223호)

2024.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Ⅰ. 제안경위 ·····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Ⅲ. 검토의견 ····· 3

Ⅰ. 제안경위

1. 발 의 자 : 한정애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9. 24.
3. 회부연월일 : 2024. 9. 25.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 주택가에 전선, 통신주, 전주(電柱), 인터넷 통신선, 방송 케이블 등이 수십년간 난립함에 따라 도시 미관이나 자연경관을 저해하며 도심 슬럼화나 우범화를 직·간접적으로 조장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 전주에 설치되는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관계 부처 및 관련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 심의를 거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전기통신사업자만으로는 사업이 부진하여 대다수 전주를 관할하는 전기사업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가공전선로에 대한 정비계획을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은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미관과 경관을 저해하는 전선로

등의 정비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임(안 제49조 제11호의2 및 제72조의3 신설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전기사업자에게 가공전선로의 정비의무를 부과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가공전선로 정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전기사업자 및 전기통신사업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고(안 제72조의3 신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용도에 가공전선로 정비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1호의2).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 11. (생 략) <신 설> 12. (생 략)	제49조(기금의 사용) ----------. 1. ~ 11. (현행과 같음) 11의2. 제72조의3에 따른 가공전선로 정비 사업 12. (현행과 같음)
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지소유자는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제20조에 따라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설비를 포함한다)의 지중이설(이하 "지중이설"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①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2조의3에서 같다----------

현 행	개 정 안
② ~ ④ (생 략) <신 설>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2조의3(가공전선로의 정비의무) ① 전기사업자는 생활안전 및 도시미관의 보호를 위하여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를 정비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공전선로 정비계획(이하 이 조에서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정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전선로의 지중이설 현황에 관한 사항 3. 정비사업 및 전선로의 지중이설 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4. 그 밖에 정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전기사업자 및 「전기통신사

현 행	개 정 안
	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기통신사업자”라고 한다) 및 관련 기관은 정비계획에 따라야 하며, 정비사업에 시행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전기사업자 및 전기통신사업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비용부담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정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현행법 제72조의2 제1항 및 제2항[1]은 배전선로 등 전선로의 지중이설 비용에 대하여 지중이설을 요청한 자(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전선로를 설치한 자(한전)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1) 「전기사업법」
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지소유자**는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제20조에 따라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설비를 포함한다)의 지중이설**(이하 "지중이설"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그 요청을 한 자가 부담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전선로를 설치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제35조의2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와 한전을 포함한 시설관리기관[2]은 생활안전 및 도시미관의 보호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시설관리기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공중케이블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중케이블을 정비[3]하여야 함.

---

2)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설비등의 제공) ①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도로, 철도, 지하철도, 상·하수도, 전기설비,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건설·운용·관리하는 기관(이하 "시설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관로(管路)·공동구(共同溝)·전주(電柱)·케이블이나 국사(局舍) 등의 설비(전기통신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설(이하 "설비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하여 설비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정을 체결하여 설비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관리기관의 사용계획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데에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
2. 관로·공동구·전주 등의 설비등을 보유한 다음 각 목의 시설관리기관
   가.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
   나.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
   다.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공사
   라.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바.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 「도로법」에 따른 지방국토관리청
3. 기간통신역무의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및 시설관리기관

3)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의2(공중케이블 정비의무) ① 전기통신사업자와 시설관리기관은 **생활안전 및 도시미관의 보호를 위하여 전주에 설치되는 케이블**(이하 이 조에서 "공중케이블"이라 한다)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비가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이하 이 조에서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부처 및 관련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정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공중케이블의 설치·철거 및 재활용 기준
3. 공중케이블 정비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4. 그 밖에 공중케이블 정비에 필요한 사항

③ 전기통신사업자와 시설관리기관은 정비계획에 따라야 하며, 정비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설비등을 제공·이용하는 자가 공동으로 분담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한전은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에 전선로·전주 정비 및 지중화 계획을 포함하고 있고 지자체, 전기통신사업자와 비용을 분담하여 가공전선로 지중이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한편, 지난 21대 국회에서 현행법을 개정하여 국민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이라 한다)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같은 조 제3항[4] 및 제49조 제11호가 신설[5]되었으나,

개정 당시 전력기금의 재원 상황과 함께 지중이설을 위한 예산 소요 추이를 지켜보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6]로 부칙에 해당 조항의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로 정하여 한시적 규정으로 신설하였으므로 2026년부터 국가 예산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을 예정임.

하지만,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도시 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공전선로에 대한 지중화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정부의 재정지원이 중단되면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여 사

---

4) 「전기사업법」
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5) 법률 제18280호(2021.6.15. 시행)

6) 「전기사업법」
제4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 10. (생 략)
11. 제72조의2에 따른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사업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

업추진이 지연되거나 규모가 축소될 우려가 있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한전과 산업통상자원부에 각각 가공전선로 정비의무 및 정비계획을 수립 의무를 부과하고 정비계획에 따라 시행한 정비사업의 비용을 국가가 같이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정부의 계획 수립 및 비용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가공전선로 지중이설 사업의 축소나 중단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현재는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한전이 자체적으로 가공전선로의 정비를 수행하고 예외적으로 공중케이블 정비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정부의 정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면 체계적인 가공전선로 정비와 효율적인 재원 투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임.

다만, 가공전선로 정비 중 지중이설이 아닌 노후설비에 대한 유지·보수와 같은 일반적인 정비는 현재 송·배전사업자인 한전이 모두 부담[7]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가공전선로 정비사업의 내용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국

7) 단,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가 포함된 경우 전기통신설비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부담하여 정비함

가, 지자체, 한전 및 전기통신사업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오히려 일반적인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초 가공전선로 지중화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규정을 한시적 규정으로 둔 취지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지중이설 사업에 대하여 우선 한시적으로 대상을 제한하여 지원하고 사업수행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 계속 여부, 범위 및 방식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계속하여 국가가 지중이설 비용의 일부를 전력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추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공중케이블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만큼 가공전선로 정비계획도 「전기사업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에 포함함으로써 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58